



제 429국회 (정기회)
제 9 차 교 육 위 원 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원회 구성 변경, 회의 의결정족수 강화 등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37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제3항)	2
2.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 완화(안 제13조 제1항)	5
3. 회의 의결정족수 강화(안 제15조 제2항)	8
4. 회의록 작성 강화(안 제15조 제5항)	13
5. 위원회 방청 허가 및 퇴장(안 제15조 제6항 및 제7항)	18
6. 개정안 부칙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9.

3. 회 부 일 : 2025.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 또는 국회,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의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주요 논의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등).

Ⅲ. 검토의견

1.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제3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이 지명하는 <u>5명</u>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 <u>4명</u>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5. -----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u>2명</u> 6. · 7. (생 략) ④ ~ ⑧ (생 략)	-----<u>3명</u> 6.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국가교육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1명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자로 구분됨¹⁾.
- 개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려는 것으로, 정치권의 관여를 축소하고 위원회의 교육분야 전문성을 보다 더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한편,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과 관련한 개정안²⁾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것으로 보임³⁾.

[위원 구성안 비교]

구 분	현행	강경숙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	김문수 의원안	김영호 의원안	백승아 의원안	정을호 의원안
국 회	9	9	7	7	7	9	9
대통령	5	4	3	3	3	5	5
교육부(차관)	1	1	-	1	-	-	-
영유아 전문가	-	-	-	-	1	-	-
교육감 협의체	1	1	1	1	1	1	1
교원단체 ⁴⁾	2	3	3	2	3	3	3
대교협, 전문대교협	2	2	2	2	2	2	2
시도지사 협의체	1	1	1	1	1	1	1
교장 단체	-	-	1	-	-	-	-
교수 단체	-	-	2	-	2	-	-
교육 학회	-	-	1	-	1	-	-
학생·청년 단체	-	-	-	2	-	-	-
학부모 단체	-	-	-	2	-	-	-

2) 소위계류 - 의안번호 7355, 7956, 10780
미상정 - 의안번호 12934, 13335

3)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및 균형감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정을호의원안의 경우 교원단체 및 영유아보육교사단체

2.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 완화(안 제13조 제1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 완화하여 1만 명 이상 5만명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u>1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0조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하나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① 국회·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②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③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 기준은 법 시행령에 따라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국민의 요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4년 플랫폼을 통한 요청은 총 3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동의요건을 충족한 요청은 없었음. 2025년에도 8월 기준 총 6건의 요청이 게시되었으나 동의요건을 충족한 요청은 없었음⁵⁾.
-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상의 현재 기준을 1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의 범위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유사한 제도로 과거 청와대 국민청

5)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견수렴·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음.

원 제도의 경우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회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달성 기준이 기존에 10만명이었으나 2021년 5만명으로 감축되어 운영 중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동의요건은 제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정책의 유연성,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다만, 국회 동의청원 요건이 5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5만명도 포함될 수 있도록 ‘5만명 미만’이 아닌 ‘5만명 이하’로 수정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 완화와 관련한 개정안⁶⁾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 완화 비교]

현 행	강경숙 의원안	김문수 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위임 - 시행령 :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u>90일 이내에</u> <u>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u> 이상인 경우	<u>1만명 이상 5만명 미만</u> <u>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u>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u>1만명 이상 5만명 이하</u> <u>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u>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의안번호 7956

3. 회의 의결정족수 강화(안 제15조 제2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 제11조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1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⁷⁾.

□ 현행규정에 따른 정족수는 다수결원리를 실현하는 의결방식 중 하나로 보이고, 회의체의 성격이나 구성원의 수, 의결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출석정족수의 수를 달리하거나, 찬성정족수를 가중하는 등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구성원을 참여시킴으로써 회의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하게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태로 운영되어 그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의사정족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동일(국민권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⁸⁾)하거나,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일반안전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와 동일(국가인권위원회)하거나 완화된 수준(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고, 국민권익위원회만이 예외적으로 중요한 안전(기존 의결을 변경하는 안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찬성⁹⁾)로

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 따라서 위원 1명이 공석일 경우 개의요건이 재적위원 과반수 보다 가중될 것으로 보임.

9) 국가교육위원회 일반안전 의결정족수와 동일함.

규정하고 있음.

< 유사 위원회 정족수 비교 >

구분		의결정족수	근거법률
국가교육위원회	현행	(개의요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요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정안	(개의요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요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가인권위원회		(의결요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국민권익위원회		(개의요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요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위원의 제척·기피 · 회피)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 (기존 의결 변경)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개의요건) 위원 4명 이상의 출석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요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보
다 신중을 기하여 강화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 ☐ 의결정족수 강화 시 해당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유사 위원회의 입법례를
살펴볼 때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라는 정족수의 기준이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헌법상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일반 의결정족수)¹⁰⁾, 국회의원 제명안, 헌법개정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에 대하여 강화된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있음.

< 국회 주요 안건 의결정족수 >

구분	안건 및 의결정족수
일반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특별 의결정족수	(국회의원 제명안, 헌법개정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자격 상실 결정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법률안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무총리 등 탄핵소추안, 계엄해제 요구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신속처리안건 지정안, 무제한토론 강제종료안 의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회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는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 보다 엄격한 수준이라는 점, 타 법률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의결은 헌법상 법률안 재의요구, 의원 제명, 탄핵소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 핵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0)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한편, 교육위원회에는 의결정족수 강화와 관련한 개정안¹¹⁾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의결정족수 비교]

현 행	(의결요건) 재적위원 과반 찬성
강경숙의원안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고민정의의원안	(의결요건)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
김영호의원안	○ 위원회 소관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의결요건)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

11) 의안번호 7355, 10780

4. 회의록 작성 강화(안 제15조 제5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회의) ① (생략)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u>작성</u> ·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⑤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속기방법으로 작성</u> -----. <u>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u> <u>2.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u> <u>3. 제4항에 따른 회의 참석자의 성명</u> <u>4. 상정안건, 심의내용 및 의결 사항</u> <u>5. 표결 수</u> <u>6. 위원장의 보고</u> <u>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나. 검토의견

-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법」과 운영규칙에 따라 위

원회의 회의¹²⁾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회의일시·장소, 출석위원 성명 등 회의개요,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의결 사항 등 회의결과와 함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¹³⁾.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회의록 작성·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회의록을 속기록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 회의일시, 출석위원 및 참석자 성명, 상정안건과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 개정안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공공기관 기록물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¹⁴⁾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

12)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가 아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포함되지 않음.

13)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회의록 등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하는 회의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명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4. 상정안건명
5. 주요 안건내용 및 토론내용
6. 의결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¹⁵⁾에 따라 해당 회의록에는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 회의개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이미 속기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¹⁶⁾¹⁷⁾, 동 운영규칙은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공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이하 “지정회의”라 한다)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해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해야 한다.

16)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회의록 등의 작성 등) ③ 간사는 회의록과 별도로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의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서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7)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16쪽 각주 14 참고) 후단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해당(2024.9 지정)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하나를 생산하여야 함.

개 회의의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회의록 기재 사항 대부분은 현행 운영규칙상 규정되어 있는바,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록을 속기록 방식이 아닌 발언자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회의내용을 정리한 형태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는데, 제60차회의(2025. 9. 19.)부터 회의록에 발언자 성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구 정정 등 일부분을 제외하면 속기록과 동일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속기록과 회의록을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별 인권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교육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강화와 관련한 개정안¹⁹⁾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8)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회의록 등의 공개) ② 위원회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19) 의안번호 6718, 7355

[회의록 작성 강화 비교]

	강경숙·고민정 의원안	백승아 의원안
작성 방법	속기방법	속기방법
작성 사항	-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출석위원 수, 성명 -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회의 참석자의 성명 - 상정안건,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표결 수 - 위원장의 보고 -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 공표	없음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기타	없음	- 회의록/녹음기록 삭제 금지 - 발언 정정·취소 시 회의록 기재 - 국민참여위, 전문위, 특위 회의 회의록에 준용

5. 위원회 방청 허가 및 퇴장(안 제15조 제6항 및 제7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위원이 아닌 사람의 위원회 회의 방청 제도를 도입하고,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방청 제도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회의) ①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u>⑥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u>⑦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해당 규정은 「국회법」²⁰⁾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방청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²¹⁾의 회의 방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방청 규정 등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 「국회법」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²²⁾의 경우 신분증 제시, 방청권 발급, 방청인 수 제한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방청 제도 관련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 한편, 교육위원회에는 회의 방청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²³⁾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3) 의안번호 7355

6.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안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며, 하위 법령(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있는바, 공포 후 법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제2조는 구법에 대해 형성된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경과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²⁴⁾

24) 위원회 위원의 수, 구성 방법 등 인적요건에 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으면 의결요건의 충족이나 종전 위원의 임기 및 구성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위원의 수나 구성 비율 등을 시행일에 맞추어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법제기준과 실제(2024), 국회사무처, 883p].

문 의 처
02)6788-5186